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 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중 개정안

개정의 경위

화재취약장소에 대한 소방시설을 보강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던 제규정을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방시설 설치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려는 것임.

개정전	개정후	비고
제 2조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물 1301을 제외한 할로겐화물을 방사하는 소화기는 지하층 및 무창층과 거실 또는 사무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분사식 자동화산 소화용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물(할론 1301을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분사식 자동화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 및 사무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에는 지하층·무창층과 바닥면적이 20㎡미만인 거실 및 사무실에는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물 소화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거실 및 사무실 중 밀폐되지 아니한 곳에는 이를 소화기를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제 6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반)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위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제 6조 제1호중 “화재위험의 우려”를 “화재의 위험이나 침수등의 우려”로 한다.	
제18조 (스프링클러배관) ⑧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 제8항에 단서 및 제1호·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차장이 벽등으로 차단되어 있고 출입구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구조인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절의 염려가 없는 곳. 2. 스크링클러설비의 동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으로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동절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제48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량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량 이상으로 할 것.	제4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량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나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p>가. 특수 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로 되고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을 감한 체적) 1m'에 대하여 다음표에 의한 양</p> <table border="1" data-bbox="112 404 450 668"> <thead> <tr> <th>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th><th>방호구역의 체적1m'당 소화약제의 양</th></tr> </thead> <tbody> <tr> <td>고무류·면화류·목모· 대때밥·넝마·종이조각· 사류 또는 벗짚류를 취급하는 것.</td><td>2.7kg</td></tr> <tr> <td>목재가공품 또는 텁발을 저장·취급하는 것.</td><td>2.0kg</td></tr> <tr> <td>합성수지류를 저장· 취급하는 것.</td><td>0.75kg</td></tr> </tbody> </table>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방호구역의 체적1m'당 소화약제의 양	고무류·면화류·목모· 대때밥·넝마·종이조각· 사류 또는 벗짚류를 취급하는 것.	2.7kg	목재가공품 또는 텁발을 저장·취급하는 것.	2.0kg	합성수지류를 저장· 취급하는 것.	0.75kg	<p>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저장량중 최대의 것에 의할 수 있다.</p> <p>제48조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중 "(불연재료로 되고,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을 감한 체적)"을 "(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을 감한 체적)"으로 한다.</p> <p>가.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나 전기실·통신기기실 및 전산기기실에 있어서는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을 감한 체적) 1m'에 대하여 다음표에 의한 양</p> <table border="1" data-bbox="473 719 824 987"> <thead> <tr> <th>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th><th>방호구역의 체적1m'당 소화약제의 양</th></tr> </thead> <tbody> <tr> <td>전기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td><td>1.2kg</td></tr> <tr> <td>고무류·면화류·목모·대때밥· 넝마·종이조각·사류 또는 벗짚류를 취급하는 것.</td><td>2.7kg</td></tr> <tr> <td>목재가공품 또는 텁발을 저장·취급하는 것.</td><td>2.0kg</td></tr> <tr> <td>합성수지류를 저장·취급하는 것.</td><td>0.75kg</td></tr> </tbody> </table>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방호구역의 체적1m'당 소화약제의 양	전기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	1.2kg	고무류·면화류·목모·대때밥· 넝마·종이조각·사류 또는 벗짚류를 취급하는 것.	2.7kg	목재가공품 또는 텁발을 저장·취급하는 것.	2.0kg	합성수지류를 저장·취급하는 것.	0.75kg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방호구역의 체적1m'당 소화약제의 양																		
고무류·면화류·목모· 대때밥·넝마·종이조각· 사류 또는 벗짚류를 취급하는 것.	2.7kg																		
목재가공품 또는 텁발을 저장·취급하는 것.	2.0kg																		
합성수지류를 저장· 취급하는 것.	0.75kg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방호구역의 체적1m'당 소화약제의 양																		
전기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	1.2kg																		
고무류·면화류·목모·대때밥· 넝마·종이조각·사류 또는 벗짚류를 취급하는 것.	2.7kg																		
목재가공품 또는 텁발을 저장·취급하는 것.	2.0kg																		
합성수지류를 저장·취급하는 것.	0.75kg																		
<p>다.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복 또는 나목에 의하여 산출한 량에 다음 표에 의하여 산출한 량을 가산한 양</p> <table border="1" data-bbox="112 833 450 1188"> <thead> <tr> <th>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th><th>가산량(개구부면적 1m'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th></tr> </thead> <tbody> <tr> <td>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td><td>20kg</td></tr> <tr> <td>목재가공품 또는 텅발을 저장·취급하는 것.</td><td>15kg</td></tr> <tr> <td>합성수지류를 저장· 취급하는 것.</td><td>5kg</td></tr> <tr> <td>기타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td><td>5kg</td></tr> </tbody> </table>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가산량(개구부면적 1m'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20kg	목재가공품 또는 텅발을 저장·취급하는 것.	15kg	합성수지류를 저장· 취급하는 것.	5kg	기타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kg	<p>제48조 제1호 다목의 표중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판 앞에 전기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473 1148 824 1197"> <thead> <tr> <th>전기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th><th>10kg</th></tr> </thead> </table>	전기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	10kg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가산량(개구부면적 1m'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20kg																		
목재가공품 또는 텅발을 저장·취급하는 것.	15kg																		
합성수지류를 저장· 취급하는 것.	5kg																		
기타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kg																		
전기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	10kg																		
<p>제80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의 겹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항, 수원의 량을 규정 ② 항, 펌프의 토출량을 규정 	<p>제8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③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 배 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 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제85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p>제85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되, 지하층·무창층 기타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장소, 실내용적이 적은 장소 또는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p>																		

	<p>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연기·먼지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게 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화재시에만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성능의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p>	
제108조 (유도등의 전원) ① 항, 유도등의 전원과 배선을 규정 ② 항, 축전지의 용량을 규정 ③ 항, 유도등의 배선을 규정	<p>제10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 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유도등 전원선을 3선식으로 하여 평상시 소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점멸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등에는 점등되도록 함
제109조 (인명구조장구의 설치기준) 1. 방열복 및 산소호흡기 또는 공기호흡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제109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열복 및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를 각 2개이상 비치할 것. 다만, 지하가의 경우에는 보행거리 500m마다 각 2개이상 비치할 것	폭발의 위험이 있는 산소호흡기는 인명구조장구에서 제외함
제112조의 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①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은 상수도 양수기 이전의 배관에서 분기하고,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3.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는 당해 대지와 접하고 있는 도로 또는 공지경계선에 따라 140m마다(공동주택 단지의 경우는 매동별 마다)1개이상을 설치할 것.	제112조의 2 제1항제2호 및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3. 소방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기준에 적합할 것.	

굳건한 대공태세 중단없는 국가발전

• 일본의 검인정 제도

	검정	감정	인정	성능평정	자기인증
내용	소방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요한 소방기기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 제품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및 성질등에 관하여 일정기술규격에 의해 시험을 하고 그 규격에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검정을 받지 않은것은 판매가 불가능함.	검정대상 이외의 소방기기로 품질확보가 요구되는 것에 품질확보를 위해 소방청에서 기기의 기술기준을 정해 이 기준에 따라 구조, 기능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것. 의뢰자의 의뢰를 받아 행하며 감정을 받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음.	소방용설비등에서 중요한 기기류는 법으로 정한 검정을 하고 기타 기기류에 관하여는 그 품질, 성능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따라서 국민이 안심하고 소방용설비, 기기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구조 기능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 기준에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국민이 품질이 보장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소방법 시행령 32조(소방시설설치적용제외)에 따라 소방서장이 소방용설비 등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지 인정하는 판단자료로 하기 위하여 소방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등으로서 기술상의 기준은 정하여 있지 않으나 기술적 기준에 정해져 있는 소방용설비등과 동등이상의 구조, 기능을 갖는지 여부나 소방용설비, 기계기구, 보수용 기계기구등으로써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	검정대상 소방용 기계기구 중 '86. 12. 1부터 검정없이 제조업자, 수입 업자 등이 기술규격 적합의 인정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것으로 자기인증 표시를 하여 판매하며 자기 인증표시를 할 때에는 미리 일정의 사항을 자치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소방법 21조 2 및 소방법시행령	소방법 21조 36의 4 및 소화 53년 소방에 제22호 등	소화 51년 9월 6일 소방에 65호 등	없음	소방법시행령 37조, 41조 2
시행기관		과동	소방설비 안전센터	과동	제조업자, 수입업자
대상품목	1) 소화기 2) 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발신기, 중재기 또는 수신기 3) 가스누설화재경보설비의 중재기, 수신기 4) 금속제 피난사다리 5) 완강기 6) 소방용 호스 7) 결합금구 8) 소화기용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제외) 9) 포소화약제 (수용성 액체용 포소화약제 제외) 10)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11) 유수검지장치 12) 누전화재경보기 13) 일제개방면	1) 특수소방펌프차(사다리, 굴절사다리, 방수탑, 화학장치 및 특수소화장치 부분에 한함) 2) 예비전원(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화재경보설비의 중재기, 수신기의 통상전원 예비용 축전지) 3) 음향장치(자탐, 가스 누설화재 경보설비, 누전화재경보설비용 벨, 부자) 4) 간이형 화재경보기(가정용으로 개발된 화재경보기)	1) 이산화탄소, 하론 및 분말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용기변, 안전장치과피판 2) 샷다등의 수압개방장치(화재사고시 소방대의 방수에 따라 샷다등을 개방시키는 것) 3) 건물내장재의 난연조치에 사용하는 방화약액 4) 구조대, 피난사다리(금속제는 제외), 미끄럼대, 미끄럼통, 피난로프, 피난용 트랩, 피난교) 5) 옥내소화전 및 연결송수관용 방수구의 개폐弁 6) 연결살수설비용 개방형 살수헤드 7) 이동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하론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호스, 노즐, 개폐弁 8) 자동차차고, 주차장 및 수리정비 공장에서 설치된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품하드 9) 화재피난용 보호구로서 자금식 호흡보호구 및 간이방연마스크 등	1) 기존 성능평정을 받은 것 1) 피난기구에 상당하는 것(피난용 미끄럼장치, 피난용 탈출구, 완강장치, 피난로프장치) 2) 加ガス시험기(가스 누설경보기의 검지장치 시험) 3) 이상고온 경보기 부착온도계 4) 간이소화장치 5) 소화설비 배관계수 6) 가스차단장치 7) 용기변 개방기 8) 버킷트형 소화장치 10) 의무설치 소화설비 이외의 간이소화장치, 하방방출형 간이자동 소화장치 11) 가요관계수(액체위험물 탱크와 배관과의 연결에 사용된 것) 12) 가압송수장치 등 13) 2차 제품방화 수조	1) 동력 소방펌프 2) 소방용 흡관
결과	합격품에 라벨부착	합격품에 라벨부착	1) 형식승인이 된 경우 자치성 소방청에서 전국 소방기관에 통지 2) 월간FESC에 계제 3) 인정품목에 라벨부착	1) 성능평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 2) 성능평정 라벨교부	합격품에 표시(라벨부착) 각인 등